



# TaxNewsFlash - Transfer Pricing

[Website](#) | [Archive](#) | [Contact](#)

## Transfer Pricing & Customs Newsletter

삼정 KPMG TAX 6 본부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회 제공합니다.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OECD 발표자료 및 국제조세/관세 관련 이슈사항 및 동향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 설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Key contacts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1.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 Update

#### 말레이시아: 그룹 내 용역 관련 주요 이전가격 이슈

2021년 6월 17일 말레이시아 과세당국(MIRB; Malaysian Inland Revenue Board)은 은행 및 보험업, 원유 및 가스산업분야의 납세자들 및 조세 전문가와 함께 국외특수관계자간 그룹 내 용역거래에서 발생하는 주요 이전가격 이슈와 MIRB의 입장에 대하여 논의하는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본 회의는 은행 및 보험업, 원유 및 가스산업분야의 납세자들을 위하여 진행되었으나, 관련된 내용은 그룹 내 용역거래가 존재하는 모든 산업분야의 납세자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그룹 내 용역(Intra-Group Services, "IGS")과 관련한 주요이전가격 이슈**

1. 주주활동(shareholder or custodial activities)용역, 중복용역(duplicative in nature), 직접적인 효익을 입증하기 어려운 용역(passive association in benefits), 및 대기업무(on-call services)인 경우

삼정 KPMG

TAX 6 본부

05 July 2021

#### KEY CONTACTS



**강길원 부대표(본부장)**

(Tel: 02-2112-0907)



**백승목 전무**

(Tel: 02-2112-0982)



**김상훈 전무**

(Tel: 02-2112-7939)

통상적으로 납세자들은 관계사간 용역이 주주활동의 특성을 지녔는지, 중복용역인지, 또는 용역수취자에게 직접적인 효익을 제공하는지에 여부에 대한 검토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대상 IGS거래의 원가에 제외되어야 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특수관계자들에게 청구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용역을 제공받은 그룹내 법인의 입장에서 효익이 발생하지 않는 성격을 지닌 대기업무의 경우 해당 비용은 청구대상 비용의 집계 시 제외되어야 하지만, 용역 제공자가 대기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실질적인 업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관련된 비용은 청구가능한 원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2. 범위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용역의 경우

업무 범위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은 IGS계약은 실무적으로 계약에 명확하게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IGS계약의 또 다른 통상적인 문제는 해당 계약 내용들이 업데이트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 3. 용역수취자가 필요한 용역인지 여부

이전가격보고서 상 납세자는 제공받은 용역으로부터 어떠한 효익을 받았는지에 대해 대부분 문서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그룹간 용역의 경우 개별 용역 수취법인의 업무관련성 보다는 그룹 정책에 따라 관련된 기업들이 일률적으로 적용 받은 경우가 있어 개별 기업별로 업무관련성을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존재하게 됩니다.

### 4. IGS용역대가 부담에 따른 실현

납세자 중 일부는 그룹 내 IGS 용역대가의 부담으로 적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납세자는 자신이 필요한 실제 용역대비 과도한 용역비의 부담으로 실적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5. 저부가가치용역(LVAS)의 초과 용역대금

OECD에 의해 정의된 LVAS(Low-value-adding intra-group services)는 그룹의 핵심사업활동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지원성격(핵심사업의 일부가 아닐 것, 독특하고 가치 있는 무형자산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 용역 제공자가 위험을 부담하거나 통제하지 않을 것)의 용역 등으로 정의됩니다. LVAS는 인적자원관리, 회계 및 감사, IT, 일반행정지원 활동 등을 포함합니다. 납세자는 청구금액이 제공받은 용역서비스의 수준을 초과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태준 상무**

(Tel: 02-2112-0696)



**윤용준 상무**

(Tel: 02-2112-0277)



**김태주 상무(관세)**

(Tel: 02-2112-7448)



**김현만 상무(관세)**

(Tel: 02-2112-7542)

이에 따라, IGS와 관련하여 납세자는 2가지 사항에 대해 유념해야 합니다.

- ① 수취한 용역에 대한 실재성 및 업무관련성 입증
- ② 부담한 용역대가에 대한 이전가격 목적상 적정한 대가임에 대한 입증

위의 2가지를 입증하기 위해 납세자는 왜 용역을 제공받아야 했으며, 납세자의 사업에 어떠한 효익을 얻었는지, 용역대금의 계산 근거에 대한 사실관계를 문서화를 통하여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 **2. 관세 Update**

### **한·인니 CEPA로 개방 확대...철강·車부품 수출 늘 것**

KOTRA는 6월 24일 '한·인도네시아 포괄경제동반자협정(CEPA)활용 인도네시아 진출 전략' 웨비나(웹+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한·인도네시아 CEPA는 2020년 12월 정식 서명 이후 양국 비준 절차를 앞두고 있으며, 이번 웨비나를 통해 CEPA 협정의 주요 내용, 인도네시아 시장 동향, 우리 기업의 활용 전략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인도네시아 CEPA로 인해 인도네시아의 시장 개방 수준은 기존 한·아세안 FTA 대비 88.5%에서 97%로 8.5% 상승하였으며, 발효 시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부품, 섬유제품 등 품목에 대해 수출 기회 확대뿐만 아니라, 문화 콘텐츠, 유통 등 서비스 시장도 신규로 개방됩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정부 주도의 인프라 개발(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프로젝트) 등으로 철강 수요가 연평균 8%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인도네시아는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니켈의 매장량이 전 세계 매장량의 24%(전 세계 최다)를 차지하고 있어 전기차, 배터리, 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FTA 협정관세 적용 신청 정확도 제고를 위한 주요 오류사항 안내**

부산세관은 6월 8일 FTA 협정관세 적용 신청 정확도 제고를 위한 주요 오류사항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수입신고 시 FTA 협정관세적용신청서에 필수 기재사항의 누락이나 잘못 신고한 경우 협정세율 적용의 형식적 요건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니, 수입신고의 정확도 제고 및 사전 통관단계에서의 오류 치유 통한 사후 추징 예방에 적극 요청을 당부했습니다.

부산세관이 안내한 주요 오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제3국송장 여부 신고 누락(중국, 아세안, 베트남, 인도, 칠레 FTA)
- 2) 원산지증명서 번호 오류(중국 FTA)
- 3) 인증수출자 번호 미기재(EU FTA)
- 4) 인증수출자 번호 부적정 기재(EU, 영국 FTA)

### 3. 국제조세, OECD Update

#### OECD Update

#### OECD 130개국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 15% 도입방안 합의

2021년 7월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6월 7일 G7 합의안과 동일하게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을 15%로 합의하였습니다.

금번 조세협약체에 139국가가 참석하였고 그 중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과 인도 등 전 세계 GDP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130개 국가들이 합의안에 서명했습니다. 다만, 협약체에는 참여했지만 저세율로 투자를 유치하는 아일랜드 등 9개 나라는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OECD는 올해 10월까지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한 뒤, 오는 2023년부터 실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저 법인세율 15%' 도입 방안은 G7과 OECD를 넘어 다음 주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도 무난히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합의 이후에도 이행을 위한 세부적인 방안에 대한 OECD회원국간의 합의안 도출과 새로운 제도 실행을 위하여 조세조약 개정을 포함한 여러 후속 입법과정에 상당기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유럽, 중국 등 내수시장 규모가 큰 국가에서의 해외매출 및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기업과 해외감면, 저세율국가 진행기업에 직접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Value Chain 및 이전가격 등 글로벌 조세정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개혁인 만큼 향후 관련된 규정의 구체화 및 예상 입법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비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MNEs should revise TP policies as Libor end date looms

#### 배경

리보 금리 ("LIBOR")는 런던 주요 은행 사이의 단기 자금 조달 이자율을 뜻하며 국제간 금융 거래의 기준 금리로 활용되며 1 개월, 3 개월, 6 개월 및 12 개월 단위로 공시됩니다.

금융위기 당시 주요 글로벌 은행들이 수익률 조작 및 부실 채권 은폐를 위해 리보 금리를 조작하는 등 리보 금리는 시장의 신뢰를 잃어 폐지가 결정되었으며 2023년 6월 말까지 단계적<sup>1</sup>으로 폐지될 예정입니다.

동 기사는 리보 금리 폐지로 인한 이전가격 측면의 영향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 요약

다국적 기업 ("MNE")은 리보 금리의 폐지를 관계사간 계약을 수정할 기회로 활용해야 하며 리보를 대체할 이자율("Alternative risk-free rate", 혹은 "AFR")이 독립기업원칙에 부합하도록 해야 합니다.

리보 금리를 AFR 로 대체함에 따라 거래의 성격, 정상가격산출방법 등 이전가격 분석에 영향을 줄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리보 금리의 폐지는 통화에 따라 기업들에게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 2021 년 말까지 Sterling Overnight Index Average ("Sonia")가 리보 금리의 대체재로 채택될 것으로

---

<sup>1</sup> 2020년 11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및 영국 금융당국은 리보 금리를 2023년 7월부터 완전 폐지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은행들은 2021년 말 이후 리보를 기준으로 한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2022년부터 리보 금리가 공개되지 않음. 이에 따라, 기존에 체결한 리보 기준 계약은 2023년 6월 30일까지 청산 필요.

예상되며 미국은 Secured Overnight Financing Rate (“Sofr”)로 대체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리보 금리를 대신할 Sonia 를 3 개월 리보 금리와 동등한 수준으로 만드는 등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계약의 수정

리보 금리를 AFR 로 대체함에 따라 계약에 대한 당사자 간의 재협상이 필요하며 재협상의 대상은 대차거래뿐만 아니라 지급보증, cash pooling 등 다양한 형태의 금융거래가 되어야 합니다.

AFR 의 위험도가 기존에 사용된 리보 금리보다 낮을 경우 마진율이 증가하는 등 AFR 이 기존 리보 금리와 동등할지 위험률이 상이할지 등의 여부에 따라 마진율이 변동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이자율이 정상가격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기위한 고려사항

관계사거래의 이자율이 전환됨에 따라 이전가격 정책이 OECD 가이드라인의 정상가격원칙과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관계사거래 계약을 수정하는 등 MNE의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 국제조세 Update

### 최신예규/판례: 조심2020부1866, 2021.05.31

처분청은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통상적인 설비매출채권 회수 기간, 청구법인이 설비매출채권의 회수기간을 7년으로 주장하는 근거 등을 종합하여 쟁점매출채권 중 설비매출채권의 통상적인 회수기간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함 (재조사)

국조법 시행령 제 6 조 제 1 항에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의 사업환경 및 특수관계거래분석, 내부 및 외부의 비교가능한 거래에 대한 자료수집,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선택 및 가격·이윤 또는 거래순이익 산출, 비교가능한 거래의 선정 및 합리적인 차이 조정 등의 분석절차를 통하여 정상가격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설비매출과 원자재 매출의 회수기간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지 아니하고 쟁점매출채권의 정상회수일을 산정한 점, 쟁점매출채권에 포함된

설비매출의 경우 해외현지법인이 공장 설립 초기 발생한 비용을 원가화하여 제품판매를 통해 회수하는데 상당한시일이 소요되므로 원자재매출과 동일한 채권 회수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불합리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통상적인 설비매출채권 회수기간, 청구법인이 설비매출채권의 회수기간을 7 년으로 주장하는 근거 등을 종합하여 쟁점매출채권 중 설비매출채권의 통상적인 회수기간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은 해외현지법인에게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수취하지 아니하였고, 2015~201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지급보증용역수수료와 관련하여 세무조정한 사실도 없는 점, 처분청이 국조법 시행령 제 6 조 제 5 항에 따라 000 모형에 의해 산정된 정상가격의 범위에서 최고값과 최저값을 제외한 중위값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정방법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지급보증용역의 정상가격을 산정하여 2015~2017 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Privacy](#) | [Legal](#) | [Unsubscribe](#)

INTERNAL USE ONLY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21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

[kpmg.com/socialmedia](https://kpmg.com/socialmedia)



[kpmg.com/app](https://kpmg.com/app)

